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6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65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8.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294,807,890원, 지방교육세 24,626,7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6

가. 주식회사 [redacte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2014. 12.경 [redacted]광역시로부터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공장용지 15,6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2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모회사로서, 2016. 5. 16.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2016. 8. 10. 이 사건 토지를 [redacted]스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6. 9. 9.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취득세 294,807,890원, 지방교육세 24,626,7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7. 4.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2017. 12. 26.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6

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8. 3. 2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한편,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항).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6

4.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대리인이 공인회계사 A이었던 사실,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서가 2017. 12. 26. A의 사무실 직원인 B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이나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대리인인 A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A의 사무소 주소지에서 조세심판결정서를 수령한 B은 A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A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B이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2017. 12. 26. 위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김동석

판사 이상욱